

###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1. 15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1. 1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1. 21) 상정의결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국장 김인규)

가. 제안이유

○ 98. 10. 21 한미통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 세율 조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자동차세 세율적용을 비영업용 승용차 2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20원씩 하락 적용하고 2000시시 초과는 220원씩 균등 적용

○ 부칙 제2조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98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기간 연장

#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자동차세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99년도 자동차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?	○ 자동차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또한 IMF 경제체제하에서 자동차 등록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영향으로 99년도에 46억원의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됨.

#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06 호
의결년월일	99. 1. 26 (제68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98. 10. 21일 한·미 통상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세율 조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자동차세 세율적용을 비영업용 승용차 2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20원씩 하락 적용하고 2000시시 초과는 220원씩 균등 적용
- 부칙 제2조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98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일로 기간연장

부천시조례 호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 중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의 시시당 세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 영 업 용	
배 기 량	시시당 세액
800시시이하	80원
1,000시시이하	100원
1,500시시이하	140원
2,000시시이하	200원
2,000시시초과	220원

조례 제1390호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 중 “1998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00년 12월 31일까지로”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제28조(과세표준과 세율) (생략) 1.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.				제28조(과세표준과 세율) (현행과 같음) 1. 승용자동차 ..... .....			
영 업 용		비 영 업 용		영 업 용		비 영 업 용	
배기량	시시당세액	배 기 량	시시당세액	배기량	시시당세액	배 기 량	시시당세액
(생략)	(생략)	<u>800시시이하</u>	100원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<u>800시시이하</u>	<u>80원</u>
		<u>1,000시시이하</u>	120원			<u>1,000시시이하</u>	<u>100원</u>
		<u>1,500시시이하</u>	160원			<u>1,500시시이하</u>	<u>140원</u>
		<u>2,000시시이하</u>	220원			<u>2,000시시이하</u>	<u>200원</u>
		<u>2,500시시이하</u>	250원			<u>2,000시시초과</u>	<u>220원</u>
		<u>3,000시시이하</u>	310원				
		<u>3,000시시초과</u>	370원				
2~6(생략) ②(생략) 부 칙(1996. 1. 6 조례 제1390호) 제2조(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)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(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소득세·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<u>1998년 12월 31일까지</u> 적용한다. (단서생략)				2~6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부 칙(1996. 1. 6 조례 제1390호) 제2조(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) ..... ..... ..... ..... <u>2000</u> <u>년 12월 31일까지</u> ..... (단서 현행과 같음)			